

신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의 개정HACCP 적용업소 정기 조사·평가 권한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관됨.

- (2)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·평가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도록 함.

마. 식품제조·가공업체 선행요건관리 평가항목 조정 및 식품별 평가사항 삭제 (제5조 관련 별표 3)

- (1) 중소기업체가 HACCP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선행요건 중 작업장의 바닥, 벽, 천장 등 개·보수가 적용의 결림돌로 작용
- (2) 바닥, 벽, 천장, 출입문, 창문의 재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작업장을

원료처리실, 제조·가공실, 내포장실로 한정하고, 미적용업체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타일 등과 같이 흠이 있는 재질도 위생관리를 적절히 할 경우 개·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
- (3) HACCP 적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적용 확대가 기대됨.

바. 「훈령·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(제27조)

※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수입식품등 검사지침」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64호, 2009. 8. 13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부 개정된 「식품위생법」 및 하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검역소장의 수입식품 검사업무 권한을 삭제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무작위표본검사 시 적용할 중점검사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수입식품등 검사지침」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「식품위생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

비(제1조, 제3조제1항, 제4조제1항, 제2항, 제5조제1항, 제6조, 제7조, 제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2항,

제10조제1항, 제12조제1항, 제2항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)

- (1) 국립검역소장의 수입식품 검사업무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른 국립검역소장의 권한 삭제
- (2) 근거법령 조항 수정 및 문장 중 용어 정비

나. 무작위표본검사에 적용할 중점검사항목을 유해물질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규정 정비(제8조제1항, 별표 1, 별표 3)

- (1) 수입식품등 무작위표본검사에 적용할 별표 1의 중점검사항목 및 별표 3의 무작위표본검사 대상농약을 삭제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.
- (2) 별표 3의 잔류농약 검사항목 중 정밀검사 대상농약을 47종에서 49종으로,

단성분 검사 대상농약을 150종에서 189종으로 조정

다. 「훈령·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(제16조)

라. 쌀에 대한 정밀검사는 무작위검사대상농약항목을 적용(별표3)

마.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농·임·수산물 중 일본산 냉동수조기 삭제(별표4)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부정·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65호, 2009. 8. 13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「식품위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 방지 및 근절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·운영하고자 「부정·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」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를 포상금

지급 대상에 추가(별표 제3호 사목(7))

(1)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영